

ESG 관점에서 본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의 변화

- 법적 규율과 시장 규율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

권연주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SG트랙, 스마일게이트 사회공헌실 실장

email: yjkwon@smilegate.com

주소: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5F

이진규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SG 트랙, 삼일회계법인 ESG 플랫폼

email: Jin-kyu.lee@pwc.com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삼일회계법인

이한준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SG 트랙, 위더스메이커스 경영전략이사

email: kuppakr@hanyang.ac.kr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15길 46 3F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email: changmin74@hanyang.ac.kr

주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409호

ESG 관점에서 본 이사회역의 역할과 책임의 변화

- 법적 규율과 시장 규율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ESG 경영과 관련하여 이사회역의 역할과 책임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사회역의 역할과 책임의 변화를 강제적으로 추동하는 것은 법과 제도가 있으며 시장에 의해 자율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국제적인 공시 가이드라인과 ESG 평가기관들에 의한 평가가 있다. 이에 우리는 이사회역에 관련한 최근 법적 규율과 시장 규율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이사회역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이사회역 구성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두번째, ESG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사회역의 책임하에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ESG각 사안에 대한 이사회역의 전문성도 요구한다. 세번째, 내부통제시스템 미가동, 이사의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해 책임을 묻는 등 이사의 의무에 대한 실질적 주목도가 높아졌다. 네번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무적·비재무적 정보의 수집, 검증 및 공시에 대해 이사회역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ESG 경영관련 이사회역 구성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략수립·관리·감독 등의 실질적 주체가 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핵심 주제어: 이사회, ESG 경영, 법적 규율, 시장 규율, 공시 가이드라인, ESG 평가

I. 서론

ESG가 국내외 기업들의 경영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지향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주주, 이사회, 그리고 기업의 경영진이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이제는 ESG를 내재화해야 하는 것이 점차 요구되고 있다. 각종 투자자, 펀드 등도 ESG 가치를 투자에 반영함으로써 투자대상 기업들의 행동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한다. 김화진(2021)에 따르면 이는 기업, 나아가 자본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 경영에 있어 요구되는 모든 정보와 의제(agenda)가 모여 분석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 이사회다. 이사회는 원래부터 기업에 존재해 왔으나 최근 ESG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새로운 의미로서 기업의 핵심 기구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배주주, 경영자,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에 모여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활동을 점검하고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준법행위 여부를 관리 및 감독한다. 정치, 사회, 나아가 근로자들과 관련된 이슈가 기업에 관련되는 성격의 것이라면 이사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공유되고 검토된다. 이사회는 점차 회사 내외의 모든 경제 주체와 거버넌스 사이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김화진(2021)에 따르면, 종래에는 이사회 운영 및 결정에 있어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인 관계가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면 이제는 규칙과 법률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이사회 운영에서 매우 중요해졌다. ESG의 'G', 즉 거버넌스는 지배구조 또는 투명경영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좋은 지배구조와 투명경영의 핵심은 이사회 경영이라고 보아야 한다.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ESG경영 촉진을 위한 이사회 역할과 책임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며, ESG경영확산을 위해서 이사회가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무는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각종 규율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사회 의무를 강제적으로 규율(regulatory discipline)하는 법률과 시장의 자율규율(market discipline)로서 이사회 역할과 책임에 대한 동향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공시 가이드라인, ESG 평가사들의 평가항목의 최근 동향을 분석해 본다. 이사회 실질적인 변화에 있어 강성 규율, 즉 법과 제도 등의 변화와 공시 가이드라인 및 평가기준과 같은 연성 규율이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SG 관련한 다양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ESG에 연관하여 이사회 역할과 책임의 변화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많지 않다. 장운제(2021)는 ESG활성화를 위한 이사회 역할을 연구했다. 그는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에 기반하여 ESG를 고려하되 그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여 이사회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중요한 ESG 의제를 정한 다음, 각각에 대한 이사회 역할을 수립해야 한다. 이사회가 중요한 ESG 의제를 정하기 위해서 이사회, 특히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또한 이사회는 ESG 공시에 대한 감독을 충실히 하여 시장에 비재무적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연구는 장운제(2021)의 연구와 목적측면에서 유사하나 최근 이사회를 둘러싼 법과 제도의 변화, 공시 가이드라인과 ESG평가로 대표되는 시장규율의 변화를 통해 실제로 요구되는 이사회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의 함의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법적 규율을 살펴본 결과 이사회와 관련된 최근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이사 및 감사 등의 선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점차 강화됨과 동시에 여성이사 선임 권고, 노동이사제 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내부통제시스템 미가동, 이사의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해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판례가 등장함으로써 이사의 관리감독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셋째, 이사회가 회사를 넘어 소수 주주를 포함한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도록 하기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나아가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사회에 대한 주요 공시 가이드라인들을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이사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환경, 사회 등 ESG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 근로자, 소비자, 나아가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인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사회는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무적·비재무적 정보의 수집, 검증 및 공시에 대해 이사회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공시 가이드라인들이 ESG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이사회에 영입하거나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의사결정사항들을 이사회가 다루도록 유도하고 있는 반면, ESG 평가기관들이 바라보는 이사회에 대한 시선은 조금 다르다. 실제로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해온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평가기관들은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ESG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바,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 발휘와 이로 인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독립성, 다양성 및 투명성은 기본적으로 요구함과 동시에 기업 내에서의 이사회 의사결정 프로세스, 책임과 보상, 시스템의 구축, 지속가능성장전략 수립 등에 대해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한다.

이러한 법적 규율 및 시장 규율의 이사회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ESG 관점에서 이사회는 (1)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며 (2) 다양성, 투명성, 독립성, 전문성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사회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3) 시스템 구축에서부터 의사결정 및 비재무적 정보 공개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ESG 경영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수립 및 실행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법적 규율과 시장 규율의 변화에 따른 이사회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장 규율에서는 이사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반영하고 ESG 경영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수립까지 요구 받고 있으나 법적인 측면에서는 애매하다. 이사회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개정 논의 정도가 있는 정도이고 주주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대한 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향후에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킬 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두번째, 법적 측면에서 이사회 내부통제관련 의무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SG 경영에 따라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는 증가하는 방향인데 이에 따른 이사회 역할과 책임의 강화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다만, 이사회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얼마나 강하게 가져갈 것인지는 향후 법적 규율 변화의 중요한 지점이다. 세번째, 앞으로 이사회는 더욱 다양하고 포괄적인 구성과 전문적 역량 확보를 요구 받을 것이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주요한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평가가 기타 사회 항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 대응 항목과 유사하게, 중요한 사회 주제별로 이사회 감독 기능에 관한 요구가 구체화될 것이다.

II. 본문

1. 법적 규율로 살펴본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동향

법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은 보수적이면서도 강제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시대적 요구에 대한 반영의 속도가 느리면서도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규율의 특성을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러 요구사항을 법 및 제도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투명성, 공정성 및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 둘째, 이사회가 기업을 관리 감독하고 견제하는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것, 그리고 셋째, 이사회가 회사만의 이익이 아니라 주주 전체 및 그 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법을 제·개정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통념과 요구를 감안하여 이전과 다른 판단을 제시하는 새로운 판례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위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최근 한국의 변화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이사회의 투명성, 공정성 및 다양성 의무 제고

ESG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이사회 구성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개정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국내법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이사회와 관련된 최근 국내 법 개정사항>

조문	제·개정일	주요 내용
상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2020.1.29.	상장회사가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공고하여야 할 후보자에 관한 사항 추가
상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2020.1.29.	사외이사에 대한 결격사유 내용 추가
상법 제406조의2	2020.12.29.	발행주식총수 1% 이상 보유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 제기 가능
상법 제542조의6 7항	2020.12.29.	0.5% 이상 6개월 이상 보유 시에도 다중대표소송 제기 가능
상법 제542조의12 2항	2020.12.29.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
상법 제542조의12 3항	2020.12.29.	감사위원회위원 선/해임 시 3% 이상 보유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의 의결권만 인정하고 일반주주에 대해서도 3%를 적용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2021.4.20.	이사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만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함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5조 3항	2022.2.3.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반드시 선임

박인호(2021)에 의하면, 상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은 상장회사가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공고하여야 할 후보자에 관한 사항에 후보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 한 기업이 파산·회생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법령 상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감사 결격 사유의 유무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제3호 내지 제5호) 주주총회 개최 전에 해당 이사·감사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미약하나마 주주들에게 이사 등의 선임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와 관련하여 그 결격사유를 확대하기도 했는데, 상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을 통해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를 결격사유로 하던 것을 3년으로 개정하였고(제1호),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 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 한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제7호).

2020년 12월 29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상법 일부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 중에는 이사 등의 공정성 및 투명성과 관련 있는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상법 제406조의2 및 제542조의6제7항을 근거로 0.5%를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주주의 경우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거하여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 단계부터 분리 선임하고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의 의결권만 인정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신종석(2022)에 의하면, 공정경제 3법의 실체화 자체는 대한민국의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입법적 성과라고 볼 수 있으나, 다중대표소송 요건이 기존 초안(0.01%) 대비 대폭 강화된 점, 3% 의결권이 원안보다 약화된 점 등에 대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사회 다양성 강화 요구가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는 여성이사할당제의¹ 도입을 들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제165조의20 조항을 통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¹ 이사회 다양성 강화는 세계 여러 나라가 추진하였다. 정준혁(2021)에 의하면, 프랑스는 2011년 이사회 및 감독 이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균형된 대표와 평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장회사 및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 이사를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2018년부터는 직업적 미래의 선택의 자유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사회 뿐만 아니라 최고 경영진 내 여성의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고 그 비율을 점차 늘리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입법들을 연이어 추진하였다.

이사 전원을 특정 성의 이사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의 여성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들이 2020년 8월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임명해 오기 시작했다. 동 개정 규정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특례조항으로, 위반에 따른 처벌 등 제재 조항은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ESG 경영이 요구되는 현재 분위기에 입각하여 대상 기업들은 자발적 준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 우려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이 제정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의 다양성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볼 때 노동이사제 또한 새로운 변화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의 중앙부처 산하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1인 이상의 비상임이사를 근로자 가운데서 임명하여야 한다. 그간 서울시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오던 노동이사제도가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대된 것이다. 임철현(2023)에 의하면 노동이사제도는 다수 근로자들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대표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공식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노사갈등을 줄여 나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노동이사제의 대표국 격인 독일은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이미 19개국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공운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에 대폭 도입하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노동이사를 사외이사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주주의 이사 임명권과 별개로 선정되는 점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 이사로써 주주의 이익을 위해야 할 경우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야 할 경우가 상충할 때의 대처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해야 할 부분은 아직 많은 것으로 보인다.

(2) 이사회 의 감독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이사회 의 감독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업의 경영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의무는 상법에 의거 정의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사항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주요 대기업들이 소수의 지배주주가 적은 주식으로 그룹의 제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재벌이라는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어 이사회가 상법에 근거하여 가지는 감독의무와 선관주의 의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ESG 경영이 강화되면서, 이사회는 이러한 점에 있어 예전과 같은 미온적인 의무 이행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의 개정보다는 판례의 변화로서 느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사회 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이다. 김정호(2022)에 의하면, 2021년 담합 행위로 인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맞은 유니온스틸에 대해 주주들이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내부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담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표이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 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회사의 내부통제구축의무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감독의무를 강조하는 유의미한 판결을 제시하였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유니언스틸])

2022년 5월 12일 이와 유사한 새로운 판례가 등장한 바 있다. 대우건설이 4대강사업 등 여러 공사의 담합으로 회사가 부과 받은 과징금 손해 약 284억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를 회사의 손해로 인정하여 대표이사 외 사내 및 사외이사 모두에게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이사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최소 손해액 284억의 1.8%에 불과한 5억 1천만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판례들에 대해, 법적으로 이사의 관리감독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얻을 수 있으나, 아직은 이사의 실질적인 책임 및 처벌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현실이며, 결과적으로 주주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실질 손실의 보전이라는 소송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대우건설])²³

대한민국에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관리감독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판결이 나온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아직은 미국의 케어막 클레임 등을 참고한 기초적인 내용에 불과한 점, 이사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했을 때와 같이 좁은 범위의 의무 위반에만 책임을 묻는 점 등은 향후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회사를 넘어선 주주 전체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고려

이사회는 경영적 의사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까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었으며, 상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적인 해석 또한 이와 그 방향을 같이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ESG 경영 요구가 심화되자, 사업계획이나 경영적 의사결정에 있어 기업의 이익뿐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 형성이 점차 요구되기 시작하고 있다. 국내외 사례를 살펴볼 때, 아직 국내에는 주주 외에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법안 또는 규칙이 거론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영국 등의 해외 사례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 바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022년 3월, 12인의 국회의원의 발의를 통해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의 “회사”의 문구를

² 이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들이 만들어낸 이른바 케어막 클레임(Caremark Claim)을 인용한 대한민국의 최초 판례라고 볼 수 있는데, 케어막 클레임이란 1996년 케어막(Caremark)이라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판결에서 “이사에게는 준법 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를 다하지 못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를 말하는데, 이는 미국 내의 준법 감시 제도와 윤리 경영을 정착시키는 방향타 역할을 하였으며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³ 독일에서도 유사한 판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김정호(2022)에 의하면 2013년 독일 지멘스사에서 오스트리아로 유출된 불법 비자금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독일 법원은 일명 콘트라법이라고 불리는 주식법 제91조2항에 의거 회사의 존속을 위협할 정도의 위험을 감지할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의무를 이사의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판단하고 관련 이사 및 담당자 등을 민·형사 처벌한 바 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바꾸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최근 물적분할로 인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부의 이전 및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충실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사회로서 이에 대해 보다 ESG 관점에서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회사의 이익이 곧 주주의 이익인 바 이를 분리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논리도 있으나, 본 입법 취지는 일반 및 소수주주들까지 비례적으로 이익 추구의 권리가 보장받아야 함에 그 중심이 있고, 이미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상충하는 실례(물적분할 등)가 존재하는 바,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

해외 여러 사례들 또한 이러한 발의안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상훈(2022)에 의하면, 미국 델라웨어 주의 회사법 조문 제102조(b)(7)(i)항에서는 이사로서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하여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관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정관으로 둘 수 있으나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Duty of Loyalty) 위반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회사와 회사의 주주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사의 충실의무 또한 양자에게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2006년 개정된 회사법 제172조제1항에서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성공을 촉진해야 할 의무(Duty to promote the success of the company)가 있음을 정의하면서 의무 이행을 위한 고려사항 중 “회사의 주주 간에 공정하게 행위 할 필요성”을 포함하였다. 법률상으로는 주주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과 일치하여 본다고 할 수 있으나, 판례를 통해 이사의 권한행사로 주주가 취약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거래의 경우 이사의 직접 의무부담을 강제화 하고 있어 앞서 기술한 발의안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로 들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손영화(2021)에 의하면 동조에서 “회사의 이사는 전체적으로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성공촉진에 가장 이바지한다고 성실히 생각하는 방법으로 행위하여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함에 있어서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6가지 고려사항을 나열하였다.

- (a) 장기적으로 본 어떤 판단에서 예상되는 결과
- (b) 회사 종업원의 이익
- (c) 공급업체, 고객, 기타 자와의 사업상의 관계
- (d) 회사 사업의 지역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e) 사업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평가의 유지
- (f) 회사 구성원 간의 공정한 고려

위 6가지 고려사항은 최근 ESG 경영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동조는 이사에 대해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과 동시에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다고 기술함으로써,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전 세계적으로 이사회에 보다 공정하고 충실하며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만큼 ESG 경영에 있어 회사 경영진을 견제하는 기구이자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변인으로서 이사회가

가치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ESG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주요 국가들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미 기존의 관련 법 및 제도 등은 이사회가 새롭게 부여되는 의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다만 해당 규정들에 대해 보다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이사회에게 필요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 및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적용하는 흐름은 현재 진행형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례들과 해석이 누적되어야 할 것이다.

2. 시장 규율로 살펴본 이사회 역할과 책임에 대한 동향

(1) 지속가능경영공시 가이드라인 측면

위에서 법과 제도상의 이사회 역할과 책임에 대한 최근의 동향을 살펴봤다면 시장자율적 측면에서 글로벌 공시 가이드라인에서의 거버넌스 부분을 분석하여 이사회 역할과 책임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시는 기업간·산업간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에 대한 비교 가능성을 높여 기업에게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2022년 12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개최한 “K&C ESG Workshop 최신 ESG동향과 전망” 포럼에서 발표한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22년사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168%가 증가하였으며, 모든 보고서 작성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나⁴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⁵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127개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 작성 시 여러 글로벌 공시 가이드라인 중 국제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GRI를 모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GRI를 중심으로 이사회 의무와 역할에 대한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번째 최근 GRI 표준기반으로 개발하여 앞으로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될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⁶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EU의 경우 EU집행위원회가 European Green Deal 및 Sustainable Finance Agenda의 일환으로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를 도입하여 지난 22년 11월 EU의회에서 최종 승인하였다. 이로 인해 유럽내 관련 의무 공시기업은 기존 1만개에서 5만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GRI 뿐 아니라 CSRD의 적용 가이드라인인 ESRS에서의 이사회 역할과 책임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경영공시는 기존 재무공시에 비해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존 재무정보 공시와의 연계성을 핵심으로 정보공시를 요구하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거버넌스 관련 공시기준을 통해 이사회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아래 세가지 경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익 고려를 위한 이사회 구조의 변화

⁴ <https://www.globalreporting.org/>

⁵ <https://www.ifrs.org/groups/international-sustainability-standards-board/>

⁶ <https://www.efrag.org/lab6>

ESG경영에 대한 관심 증대 이전에는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주요하게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면, ESG경영이 강조되면서 이사회 구성 형식이 다양한 성별, 소외된 사회 구성원, 환경, 사회 주제를 고려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는지가 중요한 관심이 되었다. 또한 이사회 구성 형식의 이해관계자 포괄성을 넘어 사회 및 환경 이슈에 대한 이사회 전문적 역량도 중요하게 고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관련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표 2>는 GRI2021과 IFRS의 이사회 구성 관련 기준이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미국의 환경단체들이 1997년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단체로서 기업들의 지속가능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국제기구이다. GRI는 지속적으로 산업별, 주제별로 보고 표준을 개선 및 발표해 왔으며, 일반사항의 경우 2021년도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이 가장 최근인 바, 흔히 GRI2021로 표현한다. GRI2021 가이드라인에서는⁷거버넌스의 구성과 이사회 선정과정과 기준에 관련된 정보공개(Disclosure)에서 이사회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ESRS의 경우 GRI2021 표준에서 요구한 것들을 포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있지는 않다. IFRS는 회계기준(IASB)의 재무정보와 IFRS 지속가능성공시기준(ISSB)을 통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거버넌스 부분에는 환경 이슈를 고려하여 기후위기관련 위험과 기회 관련 조직과 책임자는 누구인지, 관련 프로세스가 운영되고 있는지,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이 구분되어 감독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표2. GRI2021 및 IFRS에서의 이사회 구성>

구분	GRI2021	IFRS
거버넌스 구성	<p>Topic2-9 최고의사결정기구 하위 위원회의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성 •거버넌스 구성원의 임기 •각 위원의 다른 주요직책 개수/특징 •성별 •소외된 사회단체 구성원인지 여부 •경제, 환경, 사회 주제 관련 역량 •이해관계자 대변하는 대표성 	<p>IFRS S1 거버넌스</p> <p>-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의사결정 기구의 명칭 또는 의사결정기구 개인의 신원</p> <p>IFRS S2 환경관련 정보공개(Climete-related Disclosure)</p> <p>-기후관련위험과 기회의 감독에 대한 조직/책임자</p> <p>-이들의 책임이 이사회 권한, 기타 정책에</p>

⁷ <https://globalreporting.org/standards/download-the-standards/>

	<p>Topic2-10</p> <p>하위위원회 추천 및 선정과정과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주주포함) 관여여부 • 다양성/독립성 고려 • 전문성 고려 	<p>반영되는 방식</p> <p>- 의사결정기구가 관련 전략을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p>
--	---	---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기 위해 이사회가 포괄하는 성별(Gender)이슈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공시 가이드라인이 아니더라도 2022년 11월 EU 의회에서 전체 이사의 33% 이상을 소외된(Under-represented) 성별로 구성하는 여성이사선임규제 도입을 이미 의무화⁸한 바 있다.

또한 이사회역역량과 및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정보인만큼 미국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이사회 구성, 능력, 자질(경험, 전문성, 자격여부, 지식 등)과 다양성(성별, 인종, 나이 등)을 표현한 지표인 BSM(Board Skills Matrix)의 공시 모범 관행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기도 하다. 법무법인 화우의 뉴스레터(2022.06)⁹에 따르면 2018년 S&P 500기업의 46%가 BSM을 정기주주총회 서류(Proxy Statement)에 공개하고 있으며, 뉴욕시 연금기금은 2018년 미국기업의 정기주주총회서류에 포함된 마이크로소프트, IBM, Commonwealth Bank 등 BSM 모범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이사회는 더욱 다양하고 포괄적인 이사회 구성과 전문적 역량 확보를 위한 구성을 요구 받을 것이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주요한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2) 사회 주요 이슈 관련 이사회 역할 강화

UN PRI는 투자자들의 사회 영역에 대한 관심 확대를 위해 Initiative for Social Issues를 발족하였고, EU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 필요성과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Social Taxonomy에 대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Social Taxonomy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근로조건, 차별, 소비자에 대한 보호, 부패 및 탈세에 관련된 정책들까지 포괄하여 담고 있어, 이사회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회 이슈를 제시하고 있다.

⁸ Directive (EU) 2022/23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November 202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

⁹ BSM(Board Skills Matrix) 개념과 도입 현황(<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0852>)

또한 사회 관련 주요한 이슈인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EU이사회가 지속가능성 실사법 협상안을 확정함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의 자회사 및 가치사슬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협력업체, 파트너들에 대해 인권 및 환경실사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실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이사회의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기업의 인권경영 이행 및 공급망 관리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표3>은 사회 관련 이슈 중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 노동과 부패 관련한 이사회의 관리와 책임에 대해 GRI와 ESRS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3. GRI 2021 및 ESRS에서의 사회 관련 이사회의 책임>

Social Issue 구분	GRI2021	ESRS
<p>노동권과 근로조건 보호 위한 영향 관리/책임</p>	<p>Topic2-12 영향관리에 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이사회)의 역할 -경제, 환경 및 인권에 대한 조직의 영향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이사회)의 역할</p> <p>Topic2-13 영향관리를 위한 책임위임 -최고 거버넌스 기구(이사회)가 경제, 환경, 인권에 책임이 있는 고위임원을 임명했는지 여부 - 고위경영진이나 직원이 최고거버넌스 기구(이사회)에게 보고해야 하는 프로세스와 빈도</p>	<p>G1-1 기업문화 및 비즈니스 행동정책 -관리 및 감독기관이 기업문화를 형성, 감독, 홍보 및 평가하는데 어떻게 관여하는지, 관련위험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에 대한 이해 제공</p>
<p>부패 및 이해상충 관리 책임</p>	<p>Topic2-15 이해관계상충 -이해관계자들에게 이해상충 공개여부 •복수이사회 소속 •공급업체 및 기타상호지분보유 •지배주주의 존재 •관련당사자나 그들의 거래 및 미결제 잔액</p>	<p>G1-1 기업문화 및 비즈니스 행동정책 -내부 고발보호를 포함하여 부정 행위를 보고하기 위한 기업의 보고장치 -부패/뇌물수수 관련 위험에 처한 기업내 기능 식별 뿐 아니라 조직내 교육을 위한 기업의 전략</p>

공급망 관계 책임		<p>G1-2</p> <p>공급업체와의 관계관리</p> <p>-공급업체와의 관계관리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p> <p>-공급업체와의 관계에 대한 기업의 전략</p> <p>-공급측 계약 파트너를 선택하기 위해 사회적, 환경적 기준을 고려하는지 여부와 방법</p> <p>-취약한 공급업체를 지원하고 그들의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관행</p>
-----------	--	---

특히 **ESRS**는 기업문화 확립 및 공급업체와의 관계관리, 부패 및 뇌물수수의 예방, 파트너(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연체 등 결제관행, 정치적 영향력과 관련된 로비활동에 대해서까지 이사회 책임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인권경영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인권정책기본법안이 발의(2021.12.30.) 되었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대한 행정제재 및 민사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사회 관련 이슈에 대한 이사회 의무와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3)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보고 책임자로서 이사회 책임 강화

변혜영(2018)에 의하면, 재무제표로 대변되는 회계정보가 기업의 핵심적인 정보를 모두 담을 수 없다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비재무정보가 집약되어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업의 재무정보 공시가 기업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경영활동과 자본조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지속가능경영활동 관련 비재무정보 공시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가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 공시와 점차적으로 통합되고 있는 비재무정보의 공시도 결국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이익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목적으로 인해 비재무정보공시에 대한 보고 및 책임자로서 이사회 책임이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해관계자에게 실효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사회 의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CSR**D 적용대상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대외 공시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7가지 요구사항 중에 거버넌스를 명시함으로써 **ESRS**에서는 지속가능성

요소와 관련된 경영관리,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 지식과 필요 기술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IFRS 역시 S1과 S2에서 지속가능전략과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경영진과 이사회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거버넌스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이를 감독하기 위한 방안을 확보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4>는 지속가능경영전략 수립 및 공개에 대한 이사회 의무와 책임이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가를 작성 및 공시하는 방향에 대해 GRI, ESRS 및 IFRS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4.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보고 책임자로서 이사회 의무>

구분	GRI2021	ESRS	IFRS
지속가능경영전략 수립의 책임	<p>Topic2-12</p> <p>영향관리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이사회)의 역할</p> <p>-조직의 목적, 가치, 전략, 목표 수립하고 업데이트 하는데 최고 거버넌스 기구(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p> <p>-최고 거버넌스 기구(이사회)가 이러한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역할 및 프로세스가 수행된 빈도</p>	<p>G1-1</p> <p>기업문화 및 비즈니스 행동정책</p> <p>-기업은 사업수행문제에 관한 정책 뿐만 아니라 기업문화를 확립, 개발,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공개해야 함</p>	<p>IFRS S1</p> <p>거버넌스</p> <p>경영진 및 이사회 책임과 역할</p> <p>-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의사결정기구 책임, 기업의 위임사항, 이사회 권한 및 그 밖의 관련 정책에 반영하는 방법</p> <p>-의사결정기구가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전략을 감독하기 위해 가능한 적절한 방안을 확보하는 방법</p> <p>IFRS S2</p> <p>환경관련 정보공개</p> <p>-기후관련위험과 기회의 감독에 대한 조직/책임자</p> <p>-이들의 책임이 이사회 권한, 기타 정책에 반영되는 방식</p> <p>-기업의 전략, 주요거래</p>

			등 중요이사결정시 의사결정기구가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를 고려하는 방식
지속가능성보고에 관한 책임	<p>Topic2-14</p> <p>지속가능성보고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이사회)의 역할</p> <p>-지속가능성보고서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승인을 담당하는지 여부와 프로세스 설명</p> <p>-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검토 및 승인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이유 설명</p> <p>Topic2-16</p> <p>중요사항 보고</p> <p>-최고 거버넌스 기구(이사회)에 주요 우려 사안을 보고하는 방법 설명</p> <p>-보고기간 중 보고된 주요 우려사안의 성격 및 총 건수</p>	<p>IFRS Framework</p> <p>Understandability</p> <p>기존 재무정보 공시와 연계하여 정보이용자가 기업가치 평가 시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p>	

(2) ESG평가기관 측면

1) ESG 평가기관의 역할

관련 기사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ESG 평가 기관 수는 600개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¹⁰ ESG평가 기관의 설립 목적과 철학에 따라 평가 기관별 ESG 성과 평가 목적과 방법이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평가 기관은 기업이 재무적/비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위험과 기회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평가는 기관 투자자들이 ESG 투자 성과를 벤치마킹하고, ESG 목표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ESG 지수를 구성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ESG 평가 기관은 다양한 데이터와 지표를 사용하여 조직의 ESG 성과를 분석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기업의 환경 영향, 사회적 책임, 기업 거버넌스 체계, 노동 관계, 인권 등과

¹⁰ “ESG 평가’ 등급이 들쭉날쭉인 까닭... 정답이 없기 때문”, ESG경제, 2023.06.22.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ESG 평가 기관은 ESG 성과 평가를 통해 투자자, 금융 기관, 기업 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기업의 ESG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업들은 자체의 ESG 성과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ESG 평가 기관의 평가 결과는 기업들 간의 경쟁력과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한다.

2) 이사회 관련 ESG 평가 항목

이사회 관련 ESG 평가 지표는 기업의 거버넌스 측면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지표는 기업의 이사회 구성, 리더십, 기업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 이사회 책임과 투명성 등을 평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사회 관련 ESG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이사회 독립성인데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중 독립 이사의 비율을 측정한다. 독립 이사는 회사의 이해 관계자나 경영진에 대해 독립적인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이사를 의미한다. 두번째는 이사회 다양성이다. 이사회 다양성은 성별, 인종, 국적, 경험 등을 고려하여 측정되는데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반영하며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세번째는 이사회 책임과 의사 결정이다. 이사회 역할과 책임,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성을 평가한다. 주요 요소는 이사회 책임 분담, 위험 관리, 윤리적 표준, 보상 정책 등이다. 네번째는 회계 및 재무 투명성인데 이사회는 회사의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보고하고 회계 및 재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회계 감사의 독립성, 재무 보고서의 정확성과 일관성 등이 고려된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지속 가능성 전략이다.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 전략의 수립과 추진에 대한 이사회 참여와 리더십을 평가한다.

한편, 이사회 관련 평가 항목은 형식 요건을 점검하는 항목과 이사회 실질적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 요건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 요건 항목은 이사회가 경영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과, 이사회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인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경영진과 독립적 위치에서 경영진 활동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사회 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여부가 평가 대상이 된다. 한편 이사회 구성 인원의 성별과 경력 사항 등의 적정성에 대한 형식 요건 평가 항목을 통해 이사회 운영의 충실성 강화 유도를 하고 있다.

실질적 운영여부를 확인하는 평가 항목으로 첫번째는 이사회 중대성 평가 검토여부에 대한 평가 항목이다. 경영진은 기업의 활동과 비즈니스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과정을 중대성 평가라고 한다. 중대성 평가에서 식별된 중요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경영진은 부정적 영향 완화를 위한 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는 경영진 중대성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승인할 의무가 있다. ESG 평가 기관은 이사회 중대성 평가에 대한 검토 유무를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ESG 활동에 이사회적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다. 두번째로 이사회 기업의 비재무 리스크

평가 및 관리 감독 여부를 평가한다. 그동안 이사회의 역할은 재무 리스크와 준법 리스크 관리 감독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기업 외부 환경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이사회는 과거보다 비재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ESG 평가 기관은 이사회가 비재무 리스크에 대한 이사회의 관여 수준에 대해 평가하며, 비재무 리스크가 전사적 리스크 관리 영역에 포함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3) 각 평가 기관별 이사회 관련 평가 비교

2023년 현재 한국에서 참조율이 높은 ESG 평가 기관은 국내는 ESG 기준원 및 서스틴 베스트와, 해외는 MSCI와 DJSI 정도로 조사되고 있다. 각 ESG 평가 기관의 평가 항목 비교를 통해, 다수의 평가기관에서 공통으로 다루어지는 ESG 평가항목과 각 평가 기관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5. 평가기관 별 이사회 관련 평가요소>

구분	국내		해외	
	ESG 기준원	서스틴 베스트	MSC I	DJSI
1. 지배 구조 관련 (형식적 요건-구조)				
- 최고 경영자 후보군 관리 여부	●			
- 최고 경영자 승계 규정 여부	●			
- 이사회 및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여부	●	●		
- 이사회 구성 다양성/전문가/여성임원 수/	●	●	●	●
- 이사회 의장의 CEO 겸임 여부	●	●	●	●
2. 이사회의 활동 관련 (실질 요건-Activity Level)				
- 이사회의 중대성 평가 검토 여부	●			
- 이사회 비재무리스크 검토 여부	●		●	●
- 이사회 실질 활동 정도		●		●
3. 활동 유인 관련				
- 비재무적 성과 이사 KPI 반영 여부	●			
- 사내 등기 임원 주식 성과급 부여 여부	●			●
- 이사부담 완환 정책(예, 손해 배상 책임 가입 여부)	●			
- 사외이사 활동 평가	●			
4. 투명성/독립성 관련				
- 사내이사 연간 보수 공개 여부/보수 수준	●	●	●	●
- 사외이사 독립성 관련	●			
- 이사회 및 보상위원회 독립성	●	●	●	●
- 경영진 및 창립자의 주식 소유 여부				●

<표5>는 평가기관 별 이사회 관련 평가요소를 비교한 것이다. 상기 평가 기관별 이사회 관련 평가요소를 통해 각 평가 기관의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첫번째로 ESG 기준원은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과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작업을 주도하던 기업지배구조원(과거 KCGS)으로부터 발전된 ESG 평가 기관이다. 이에 타 평가 기관 대비 기업의 거버넌스에 관한 평가 항목이 구체적이고 항목이 많은 특징이 있다. ESG 기준원의 이사회 활동에 관한 평가는 다음의 과정으로 발전되어 왔다. 일차적으로 이사회 구성 및 다양성,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와 같은 형식적 요건 평가 항목 중심 평가가 진행되었다. 이어 최근 이사회 중대성 평가 검토 여부, 비재무 리스크 검토 여부와 같은 이사회 실질적 활동 수행 여부를 점검하는 항목으로 확장 강화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두번째 서스틴베스트는 한국에서 ESG 평가를 가장 이른 시점에 시작한 평가 기관이다.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는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설계되어 있다. 투자자를 포함한 각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어떠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지, 또한 그것이 장기적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여 기업이 ESG 리스크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해외의 ESG 평가 항목 벤치마크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부합하는 항목을 추가 반영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서스틴베스트의 이사회 관련 주요 평가항목은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여부 및 구성), 이사회 구성(이사회 의장의 독립성 및 사외이사의 구성 현황 및 성별), 이사회 활동 수준(이사회 개최 수 전체 이사회 수, 구성원의 출석률, 사외 이사의 의견 제시율), 이사회 구성원의 보상 적정성, 보상위원회 설치 여부 등이다.

세번째로 MSCI는 명시적인 이사회 관련 평가항목의 수는 타 평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는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성숙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해외 특히 미국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과 Practice는 한국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 이에 ESG 평가 기관에서는 법률과 Practice로 규정화 되어 있는 사항을 ESG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치 않을 수 있다. 한편, MSCI 평가 항목의 특징은 이사회가 경영진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충분한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지, 이사회 구성원이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격성 보유 여부를 중요시 여긴다. 또,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보상위원회를 통해 경영진의 과도한 보상 지급을 견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항목이 강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DJSI는 ESG 평가를 위해 S&P Global의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SA)를 기반으로 S&P Global ESG Score를 사용한다. 이사회 관련 주요 평가 항목은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 이사회 구성원의 경험과 효율성, 이사회 위험관리 및 ESG 관련 전략, 이사회 보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환경 사회 측면에서 이사회 관련 평가

이사회 활동과 관련한 ESG 평가 기관의 평가 항목은 대부분 거버넌스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 들어 환경과 사회 관련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이사회 역할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모든 기업에게 위기와 기회 요인으로서 반드시 기업 경영 전략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가 되었다. 이에 각종 공시 요구사항에도 기후 변화에 관한 규정을 정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권고안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사회에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사회 권한, 기후변화에 대한 이사회 역량, 기후변화에 관한 성과 지표가 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원의 성과평가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공시 요구항목은 대부분 ESG 평가 기관의 평가항목에도 유사하게 반영되고 있다.

또한 기타 사회 환경 항목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후 변화와 함께 중요성이 확대되는 항목은 생물다양성, 인권, 공급망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는 이러한 ESG 주제는 비재무 리스크 항목으로 통합적으로 분류되고 있다. 비재무 리스크에 대한 이사회 감독은 ESG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SG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항목과 유사하게, 각 주제별로 이사회 감독 기능에 관한 요구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사회 ESG 각 주제별 감독 기능에 관한 평가 항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Ⅲ. 결론

ESG 경영에 있어 거버넌스, 특히 이사회역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역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변화 요구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역의 역할과 의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강제적 규율인 법 및 규정의 변화와 자율적 규율인 국제표준, 공시 가이드라인 및 주요 평가기관들의 이사회와 관련된 평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강제적 규율인 법 및 규정은 이사회역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요구함과 동시의 주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관리감독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자율적 규율인 각종 이니셔티브 및 평가방법론 등은 이사회역이 얼마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기업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환경, 사회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과거 기업에 있어 이사회역의 주요 역할은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진을 관리 및 감독하고 견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ESG 경영에 있어서의 이사회역은 주주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확대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 모든 변화는 이사회역이 다양한 리스크가 산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변화할 이사회역의 역할과 의무 또한 이사회역의 존재 목적에 부합되도록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호, “내부통제시스템과 이사의 법적 책임 - 특히 독일주식법의 상황을 소개하며 -“ 『상사법연구』, 제41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22, p.155-214.
- 김화진, 『이사회 경영, ESG와 기업지배구조』, 더벨, 2022
- 박인호, “이사 및 이사회 관련 2020년 개정 상법의 쟁점“ 『경영법률』, 제31권 제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p.93-126.
- 변혜영, “비재무적 공시의 가치 관련성 연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윤리경영학회, 2018, p.175-204
- 손영화, “ESG 활성화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3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p.3-82.
- 신종석, “주식회사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법적 과제”,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p.111-134.
- 이상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충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하는 법안에 대한 검토-“, 『상사법연구』, 제41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22, p.399-450.
- 임철현, “현재 노동이사제도의 회사법상 쟁점”, 『가천법학』, 제16권 제1호, 가천대학교법학연구소, 2023, p.107-140.
- 장윤제, “ESG활성화를 위한 기관투자자와 이사회 역할 - 재무적 성과와의 연계와 관련하여”, 『기업법연구』, 제35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21, p.117-153.
- 정준혁, “프랑스 회사법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권 실사, 주주행동주의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제41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3, p.1-48.